|  |  |  |
| --- | --- | --- |
|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6]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상무주관부서•국가세무국•관광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해관총서 광둥(廣東)지서 및 각 직속해관, 재정부 주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감찰요원 판사처 :  2015년 4월 28일 국무원 제90차 상무회의에서는 개항장 입국면세점을 증설 및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재정부는 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관광국과 회동하여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 및 증설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무원은 광저우 바이윈(廣州 白雲) • 항저우 샤오산(杭州 蕭山) • 청두 쑤앙리우(成都 雙流) • 난징 루커우(南京 祿口) • 선전 바오안(深圳 寶安) • 쿤밍 창수이(昆明 長水) • 충칭 장베이(重慶 江北) • 톈진 빈하이(天津 濱海) • 다롄 저우수이쯔(大連 周水子) • 선양 타오셴(沈陽 桃仙) • 시안 셴양(西安 咸陽) 및 우루무치 디워푸(烏魯木齊 地臥堡) 등 공항의 개항장, 선전(深圳) 푸텐(福田)•황강(皇港)•사터우쟈오(沙頭角)•원진두(文錦渡) 항구, 주하이(珠海) 항구, 헤이허(黑海) 항구 등 수륙(水陸) 개항장에 각 하나의 입국면세점을 개설하는데 동의하였다.[<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 및 증설방안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공문>(국함[2015]221호)].  국무원의 결정을 실행하고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를 규율하며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의 원활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 잠정방법  제1조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 업무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률•법규 및 중국의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개항장 입국면세점이라 함은 대외 개방한 공항, 수로•육상운송 개항장의 격리구역에 설치된 규정에 따라 입국여객을 상대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경영장소를 지칭한다.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구체적인 경영 적용대상, 상품 품목, 면세 세종(稅種), 금액수량 등은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는 개항장 입국면세점에 대하여 특허경영제를 시행한다.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분포 및 건설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한다.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분포 및 입지 선정은 입국여객의 유동량을 근거로 하고 구역 분포 요인과 결부시켜야 하며 자원 절약, 환경보호, 경쟁경쟁 유지, 낭비 예방, 감독관리의 편리 등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4조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면세품 경영자격을 취득하였고 최근 3년간 개항장 및 시내 출입국면세점을 연속적으로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존 기업에 대한 면세점 경영 지역•유형 제한을 취소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개항장 입국면세점 경영권 입찰에 평등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개항장 입국면세점은 반드시 면세품 경영자격을 보유한 기업이 절대적인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제5조 개항장 입국면세점 개설 수량, 개항장 및 영업장소의 규모에 대한 규제는 재정부가 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과 공동으로 의견을 도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제6조 개항장 입국면세점은 해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관의 비준을 거쳐 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개항장 입국면세점은 공항 또는 기타 입찰 모집자가 입찰의 방식으로 경영주체를 확정한다. 입국 여객 유동량이 적거나 매장 면적에 한계가 있는 등 입찰 모집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에 규정한 경쟁적 협상 등 기타 방식으로 경영주체를 확정할 수 있다.  제8조 신규 설립되었거나 경영계약 기간이 만료된 개항장 입국면세점 경영주체가 입찰 또는 비준 절차를 거쳐 입찰 모집자 또는 개항장 오너가 면세품 경영기업과 체결하는 경영계약의 계약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 갱신되어서는 아니되며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경영주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입찰 모집자 또는 개항장 오너는 입찰 또는 비준을 받은 기타 방식으로 면세품 경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주체 협력계약서(각 주주의 지분비율, 경영주체의 업무 상호보완성 등 포함. 단독으로 면세점을 개설하는 경우는 제외.);  (2) 경영주체의 기본 상황(기업의 성격, 경영범위, 생산경영, 자산부채 등 포함);  (3) 개하장이 경영주체와 체결한 개항장 입국면세점 개설 계약서.  제10조 경영주체의 지분구조, 경영상황 등 기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공항 또는 기타 입찰 모집자는 국무원의 설립 비준을 득하여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규모통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입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항장 입국면세점 경영주체는 해관의 비준을 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면세점의 건설을 완료하고 개업하여야 한다. 비준을 득하여 설립된 개항장 입국면세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요구에 따라 개업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경영을 중단한 경우 공항 또는 기타 입찰 모집자는 이 방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이행하여 경영주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개항장 입국면세점은 원칙상 영업장소 면적을 확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점 또는 별도의 매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장소 면적 확대, 지점 또는 별도 매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이 방법 제5조, 제6조에 규정한 신규 매장 개설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면세상품특허경영비 납부방법은 일시적으로 <재정부의 <면세상품특허경영비 납부방법> 인쇄발부 통지>(재기[2004]241호) 및 <재정부의 <면세상품특허경영비 납부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보충통지>(재기[2006]70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은 상호간의 업무연락 및 정보교환을 강화하여야 하고 직책 및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개항장 입국면세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은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법규 및 규칙•제도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관광국  2016년 2월 18일 |  | **关于印发《口岸进境免税店管理暂行**  **办法》的通知**  财关税﹝2016﹞8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商务主管部门、国家税务局、旅游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  2015年4月28日国务院第90次常务会议决定，增设和恢复口岸进境免税店。财政部会同商务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国家旅游局研究提出了口岸进境免税店政策和增设方案。  国务院同意在广州白云、杭州萧山、成都双流、青岛流亭、南京禄口、深圳宝安、昆明长水、重庆江北、天津滨海、大连周水子、沈阳桃仙、西安咸阳和乌鲁木齐地窝堡等机场口岸，深圳福田、皇岗、沙头角、文锦渡口岸，珠海闸口口岸，黑河口岸等水陆口岸各设1家口岸进境免税店[《国务院关于口岸进境免税店政策和增设方案的批复》（国函﹝2015﹞221号）]。  为落实国务院决定，规范管理口岸进境免税店，确保口岸进境免税店政策的顺利实施，现印发《口岸进境免税店管理暂行办法》，请遵照执行。  口岸进境免税店管理暂行办法  第一条　为规范口岸进境免税店管理工作，依照有关法律法规和我国口岸进境免税店政策，制定本办法。  第二条　口岸进境免税店，指设立在对外开放的机场、水运和陆路口岸隔离区域，按规定对进境旅客免进口税购物的经营场所。口岸进境免税店具体经营适用对象、商品品种、免税税种、金额数量等应严格按照口岸进境免税店政策的有关规定执行。  第三条 国家对口岸进境免税店实行特许经营。国家统筹安排口岸进境免税店的布局和建设。口岸进境免税店的布局选址应根据出入境旅客流量，结合区域布局因素，满足节约资源、保护环境、有序竞争、避免浪费、便于监管的要求。  第四条 除国务院另有规定外，对原经国务院批准具有免税品经营资质，且近3年有连续经营口岸和市内进出境免税店业绩的企业，放开经营免税店的地域和类别限制，准予这些企业平等竞标口岸进境免税店经营权。口岸进境免税店必须由具有免税品经营资质的企业绝对控股（持股比例大于50%）。  第五条 设立口岸进境免税店的数量、口岸和营业场所的规模控制，由财政部会同商务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和国家旅游局提出意见报国务院审批。  第六条 经营口岸进境免税店应当符合海关监管要求，经海关批准，并办理注册手续。  第七条　口岸进境免税店一般由机场或其他招标人通过招标方式确定经营主体。如果不具备招标条件，比如在进出境客流量较小、开店面积有限等特殊情况下，可提出申请并报财政部核准，按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规定的竞争性谈判等其他方式确定经营主体。  第八条 新设立或经营合同到期的口岸进境免税店经营主体经招标或核准后，招标人或口岸业主与免税品经营企业每次签约的经营期限不超过10年。协议到期后不得自动续约，应根据本办法第七条的规定重新确定经营主体。  第九条 招标人或口岸业主经招标或采用其他经核准的方式与免税品经营企业达成协议后，应向财政部、商务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和国家旅游局备案。备案时需提交以下材料：  （一）经营主体合作协议（包括各股东持股比例、经营主体业务关联互补情况等。独资设立免税店除外）；  （二）经营主体的基本情况（包括企业性质、营业范围、生产经营，资产负债等方面）；  （三）口岸与经营主体设立口岸进境免税店的协议。  第十条 经营主体的股权结构、经营状况等基本情况发生重大变化时，应向财政部、商务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和国家旅游局报告。  第十一条 自国务院批准设立口岸进境免税店的规模控制之日起，机场或其他招标人应在6个月内完成招标。经营口岸进境免税店自海关批准之日起，经营主体应在1年内完成免税店建设并开始营业。经批准设立的口岸进境免税店无正当理由未按照上述时限要求对外营业的，或者暂停经营1年以上的，机场或其他招标人按照本办法第五条、第六条和第七条的规定重新办理审批手续、确定经营主体。  第十二条　口岸进境免税店原则上不得扩大营业场所面积，不得设立分店和分柜台。确需扩大营业场所面积、设立分店和分柜台的，按照本办法第五条、第六条规定的开设新店程序审批。  第十三条　口岸进境免税店缴纳免税商品特许经营费办法，暂按《财政部关于印发<免税商品特许经营费缴纳办法>的通知》（财企﹝2004﹞241号）和《财政部关于印发<免税商品特许经营费缴纳办法>的补充通知》（财企﹝2006﹞70号）规定执行。  第十四条 财政部、商务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和国家旅游局应加强相互联系和信息交换，并根据职责分工，加强协作配合，对口岸进境免税店工作实施有效管理。  第十五条　财政部、商务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和国家旅游局可以定期对口岸进境免税店经营情况进行核查，发现违反相关法律法规和规章制度的，依法予以处罚。  第十六条　本办法由财政部、商务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和国家旅游局负责解释。  第十七条　本办法自2016年2月18日起施行。  　　财政部  商务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旅游局  　　2016年2月18日 |